

#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2007년도 노동부 고시

## 1.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6 - 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 1.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가.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생략  
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이 보험료율을 적용함

###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200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 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4
석탄광업	522	수제품 제조업	23
금속 및 비금속광업	304	기타제조업	35
채 석 업	184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2
석회석광업	76	<b>4. 건설업</b>	<b>38</b>
제 염 업	4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기타 광업	81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1	자동차여객운수업	27
2. 제조업		화물자동차운수업	71
식품제조업	27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8
담배제조업	12	항공운수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3	운수관련 서비스업	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8	창 고 업	2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7	통 신 업	13
목제품 제조업	55	6. 임 업	42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9	7. 어 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8	어업	222
인 쇄 업	21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8
화학제품 제조업	23	8. 농 업	27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8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고무제품 제조업	32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8
유리 제조업	27	건설기계관리사업	110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7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19
시멘트 제조업	31	기타의 각종사업	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56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6
또는 금속가공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금속제련업	12	교육서비스업	9
금속재료품 제조업	42	0. 금융 보험업	6
도 금 업	28		
기계기구 제조업	33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8		
전자제품 제조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56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31		

※ 해외파견업 : 19/1000

## 2. 200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 노동부 고시 제2006 - 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선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4%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 3.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 노동부고시 제2006 - 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 1. 기준임금액

#####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업분류	기준임금액
A.농업 및 임업	1,159,000
B.어업	1,250,000
C.광업	1,621,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F.건설업	2,311,955
J.통신업	1,226,000
K.금융 및 보험업	1,906,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11,000
S.가사 서비스업	90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234,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4.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 임금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6 - 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7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1,955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5.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 2006 - 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878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